

일반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운영 내규

제정 2022.09.01.

개정 2024.03.01.

개정 2024.09.01.

개정 2025.03.01.

개정 2026.09.0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석·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 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제2장 교육과정 운영 및 교·강사 배정

제3조 (교육과정)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는 과학기술정책전공, 과학기술실용화전공, 과학기술창업전공, 과학기술경제안보전공의 4개 전공으로 구성되며, 과학기술 정책 등에 대한 이해와 기술 이전·사업화 및 창업 전문지식·역량을 갖춘 기술 실용화 전문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과정은 과학기술 실용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학, 기술경영학, 창업학, 법학, 경제학, 과학기술학, 경제안보학 등의 융합교육과 특화산업 분야의 과학기술 실용화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과학기술 교육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4.03.01>

제4조 (과목개설)

1.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의 교육 목표에 맞는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공별 정규 교과목을 개설한다.
2. 정규 교과목 외에 논문작성 또는 연구논문 작성을 위한 세미나를 비롯하여 전공 분야의 연구지도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3. 특화산업 분야 비전공자를 위한 비교과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비전공자 학생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이수토록 한다.

제5조 (교·강사 배정) 전임교원 배정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비전임교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장 학위과정

제6조 (학위과정)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의 학위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은 학위논문제와 연구논문제로 구분되며 선택 가능하다.
 - 가. 학위논문제의 경우 33학점(연구지도 9학점 포함)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나. 연구논문제의 경우 39학점(연구지도 9학점 포함)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 취득하는 전공 6학점은 지도교수의 과목 또는 지정하는 과목이어야 한다.
2. 박사학위과정은 학위논문제로 45학점(연구지도 9학점 포함)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학위논문제로 78학점(연구지도 18학점 포함)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4. 학위과정별 최소 학점 이수 요건 및 학과 교육과정은 별도로 정한다(별표 #1. 교육과정 기본구성표 참조).

제7조 (전공의 선택 및 변경)

1. 전공은 학생이 입학 원서 제출 시 선택한 전공을 기준으로 하며 전공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2. 최종 학위기 전공명은 이수 교과목의 성격, 학위논문의 주제, 논문 지도교수의 전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3. 석·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자의 하위 학위 과정의 전공이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와 관련된 학과인 경우 보충과목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03.01>

제4장 논문지도

제8조 (지도교수의 선정 및 변경)

1. 지도교수는 신입학 또는 편입학 후 1개 학기 내에 해당 교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논문지도교수는 선정 당시 2년(박사학위과정의 지도교수는 3년) 이내에 정년퇴임을 하지 않는 교원이어야 하며, 논문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에는 퇴임 후 2년까지 논문을 지도할 수 있다.
3. 학생, 논문지도교수의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논문지도교수의 변경은 논문심사신청서 제출 1학기 전에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기에 관계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5장 학위청구 자격시험 및 연구윤리교육

제9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1. 종합학력시험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학과에서 지정한 2개 과목을 필기시험으로 시행하며, 박사학위 및 석박사통합의 경우 신청자가 선택한 2개 과목을 추가하여 총 4개 과목을 필기시험으로 시행한다.
2. 필기시험의 경우, 출제와 채점은 해당과목을 맡고 있는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으로 한다.
3. 박사학위 및 석박사통합의 종합학력시험에서 추가되는 2개 과목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전체 4개 과목 중 논문 지도교수의 과목이 1개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①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게재(단독논문 및 공동논문으로 하며 공동논문의 경우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및 국내 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다음과 같이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한다. 단, 기술이전 및 창업 실적의 경우에는 반드시 학과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해당 실적에 대한 과목 인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학과 운영위원회에서는 과목 면제 수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4.03.01., 2026.09.01>

1. SCI 및 SSCI급 학술지 논문 게재 1편당 2과목 면제
2.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또는 SCOPUS 논문 게재 1편당 1과목 면제
3. 국내외 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또는 교내 일반학술지에 준하는 논문 게재 2편당 1과목 면제
4. 지도교수의 지도에 의한 기술이전 및 창업 실적의 경우 **종합학력시험 면제 관련 학과 회의를 통해 최대 2과목까지** 면제
5. 학과에서 인정한 특화산업 보충교과(AI기반 첨단기계,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분야) 1 과목당 1과목 면제

제11조 (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제12조 (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제6장 학위청구논문 심사

제13조 (학위논문 심사 신청자격) 학위논문 심사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 학술대회 발표논문 1편 이상
2.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게재 2편 이상
3. 석·박사, 석박사통합과정 공통 : 외국어시험 및 종합학력시험 합격, 연구윤리교육 이수

제14조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1. 학위논문제를 선택(석사학위 논문대체 포함)한 학생은 학위논문 심사 학기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한 예비발표를 하여야 한다(별표 2-1#. 예비**발표** 신청서, 별표 2-2#. 예비**발표** 결과보고서). <개정 2024.03.01., 2026.09.01>
2. 예비발표에 대한 심사는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를 포함한 교내 교수 3인 이상이 참석하여 진행 하되 가급적 공개로 진행하여야 한다. 단, 석사학위 학생의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포함한 교내 교수 2인 이상이 참석하여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4.09.01., 2025.03.01>
3. 예비발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 (학위청구논문 심사)

1. 학위청구논문 심사 절차는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2. 박사학위과정의 학위청구논문 심사 시 내부 심사위원 3인은 지도교수 및 소속학과 전임교원을 포함한 교내 교수로 구성한다. <신설 2025.03.01.>

제16조 (논문대체 심사절차)

1. 석사학위과정의 학위청구논문은 연구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구논문 심사의 경우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절차(자격시험, 연구계획서, 예비발표)에 준하여 진행한다.
3. 연구논문 심사는 석사학위논문과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한다.

제7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7조 (의사결정 방식)

1. 안건에 대한 협의는 학과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장 보칙

1. 학과 운영 내규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 대학교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부 칙 (2022.09.01.)

제 1 조(시행일) 이 내규는 학과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4.03.01.)

제 1 조(시행일) 이 내규는 학과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자도 변경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2024.09.01.)

제 1 조(시행일) 이 내규는 학과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자도 변경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2025.03.01.)

제 1 조(시행일) 이 내규는 학과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자도 변경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2026.09.01.)

제 1 조(시행일) 이 내규는 학과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자도 변경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별표 #1.》 제 6조 4 관련, 「교육과정 기본 구성표」 <개정 2024.03.01., 2024.09.01., 2025.03.01., 2026.09.01>

구분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
		학위논문제 (논문형)	연구논문제 (논문대체형)		
총 이수 학점		33이상	39이상	45이상	78이상
학과 공통 교과 ²⁾		최소 9	최소 9	최소 12	최소 12
		· 과학기술정책연구방법론 (or 기초연구조사방법론, 사회과학연구조사방법론) · 과학기술정책학(or 과학기술혁신정책론) · 기술경영론(or 기술혁신전략론) · 창업전략론(or 벤처창업전략론) · 과학기술안보론(or 과학기술경제안보론)		· 과학기술정책연구방법론 (or 기초연구조사방법론, 사회과학연구조사방법론) · 과학기술정책학(or 과학기술혁신정책론) · 기술경영론(or 기술혁신전략론) · 창업전략론(or 벤처창업전략론) · 과학기술안보론(or 과학기술경제안보론) · 고급연구조사방법론(or 과학기술정책고급연구방법론)	
전공 영역 교과 ^{a)}	일반	12 이상	12 이상	21 이상	45 이상
	산학 프로 젝트	선택 (최대3)	필수 (최소6~최대9)	선택 (최대3)	선택 (최대3)
		·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실용화 산학프로젝트, ·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사업화 산학프로젝트 · 첨단기계 기술실용화 산학프로젝트, · 첨단기계 기술사업화 산학프로젝트 · 과학기술융합실용화산학프로젝트, · 과학기술융합사업화산학프로젝트 · 경제안보 산학프로젝트, · 기술보호산학프로젝트			
연구지도 (필수)		9	9	9	18

a) 수강신청 전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통해 타학과 교과를 이수한 경우 전공영역교과로 인정 받을 수 있음(별표 #3. 전공영역교과 인정 확인서).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예비**발표** 신청서

지도교수 : _____(인)

성 명	(한 글)	(영문)	(한 자)	학 번	
과정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전공	과학기술정책 ☐ 과학기술실용화 ☐ 과학기술창업 ☐ 과학기술경제안보 ☐	학 기	
현주소			연락처	자 택 : 휴대폰 : 이메일 : 	
논 문 제 목	국어 : 외국어 : 				
대학원 학위논문청구 심사절차 및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의 학과 내규 제13조에 의거하여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_____(인) 주임교수 귀하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예비발표 결과보고서

석사과정 ☐ / 박사과정 ☐

논문 제출자	학번		전공	과학기술정책 ☐	지도 교수	
	성명			과학기술실용화 ☐		
논문제목	국문					
	영문					
(심사의견)						
심사위원	성명	성적평가기준(판정)				점수
		100-90점	89-80점	79-70점	69점 이하	
위 원 장	(인)	매우우수	우 수	만 족	불합격	
위 원	(인)	매우우수	우 수	만 족	불합격	
위 원	(인)	매우우수	우 수	만 족	불합격	
위 원		매우우수	우 수	만 족	불합격	
위 원		매우우수	우 수	만 족	불합격	
결정 성적		매우우수	우 수	만 족	불합격	

* 예비심사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반드시 3인 이상이어야 함(심사위원별 서명 必)

** 위원장은 참여위원들의 점수를 확인(평균)한 후 결정성적을 기입하여야 함

년 월 일

심 사 위 원 장 _____(인)

지 도 교 수 _____(인)

주 임 교 수 _____(인)

타학과(타대학원) 교과목 수강신청서

과 정		학 과		전 공	
학 번		학 기		성 명	연락처:

신청교과목 현황

교과목 개설대학원 및 개설학과	교과목 코드	분반	교과목명	학점	담당교강 사	비고(보충과목여부)

타학과 교과목 신청 사유(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학과 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박사과정생은 석사과정만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 학과의 교과목 및 특수대학원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하위학위 과정에서 기 취득한 동일 교과목 신청불가)

***학생의 소속 학과에서는 전공 및 보충과목으로 인정 시에만 학과 주임교수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과목으로 수강 시에는 '보충과목여부'에 '보충' 으로 기재해 주시고, 반드시 보충과목 등록 후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 및 수업 특성상 타학과 학생의 수강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업담당 교강사와 사전에 상담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타학과(타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확인자 : 지 도 교 수
(인)

주 임 교 수
(인)

대학원장 귀하